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89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직원 파견에 대한 파견수당 세부 기준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